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3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348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6411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641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5. 21. 접수 제71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11줄의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639호”를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630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줄의 “2018. 1. 23.”을 “2018. 3. 14.”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

별지